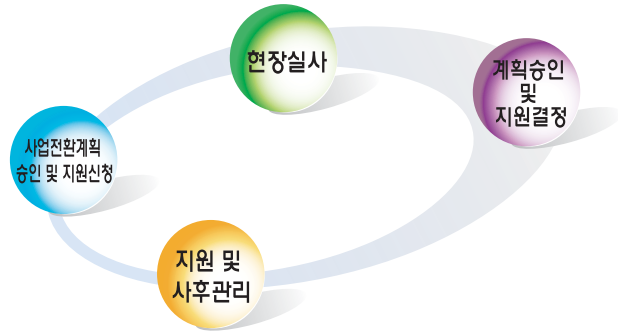


◆ 사업진행절차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신청

- ▶ 접수기간 : 2006. 9. 4~(수시접수)
- ▶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 ▶ 제출서류 :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신청서 등

현장실사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기업을 진단하고 사업전환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

계획승인 및 지원결정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고 자금지원 결정

지원 및 사후관리

- ▶ 승인기업에 자금, 컨설팅, 사업전환 절차 간소화 등 시책 연계지원
- ▶ 사업전환계획 이행에 대한 이행실적 조사

◆ 문의 및 신청안내

▶ 중소기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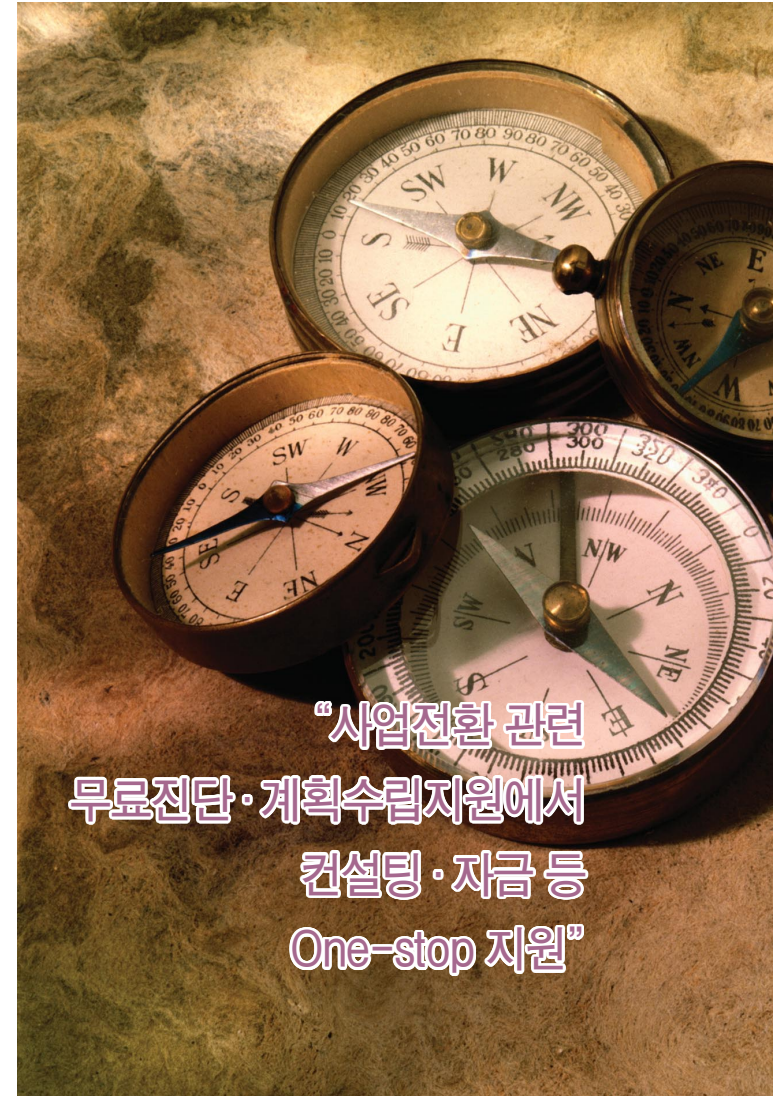
지방중기청	전 화	지방중기청	전 화
서울	02) 509-7018~9	인천	032) 818-8323
부산·울산	051) 601-5111	강원	033) 260-1600~1
대구·경북	053) 626-2601	충북	043) 230-5300
광주·전남	062) 360-9205	전북	063) 210-6400
경기	031) 201-6800~2	경남	055) 268-2511~9
대전·충남	042) 865-61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접수처)

지역본부	전 화	지역본부	전 화
서울	02) 769-6858	울산	052) 277-3283
부산	051) 630-7400	경기	031) 259-7900
대구·경북	053) 601-5260	경기서부	031) 496-1079
경북중·서부	054) 476-9311	경기북부	031) 920-6700
경북동부	054) 223-2040	충북	043) 230-6800
인천	032) 450-0500	전북	063) 213-2130
광주·전남	062) 600-3000	경남	055) 212-1350
전남서부	061) 287-7755~6	강원	033) 256-9611~3
전남동부	061) 724-1066	강원영동	033) 646-9967~8
대전·충남	042) 866-0114	제주	064) 751-2055~7
충남북부	041) 621-3687		

▶ 인터넷 이용안내

중소기업청 : www.smba.go.kr
 중소기업진흥공단 : www.sbc.or.kr



“사업전환 관련
 무료진단·계획수립지원에서
 컨설팅·자금 등
 One-stop 지원”

◆ 사업 목적

경영여건 변화로 인해 현재 영위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컨설팅 등 시책수단을 연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 사업전환의 정의

- ▶ 사업전환은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품목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품목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
- ※ 사업전환은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창업과 구별

사업전환의 유형

구 분	사 업 전 환 내 용	사업전환비중
업종전환	영위업종 사업용자산 양도·폐기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완전전환
업종추가	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	30% 이상
품목추가	현재 영위업종내에서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며, 그 생산에 필요한 기술, 시설, 공정등이 달리 요구되는 경우	30% 이상

- 제조업 ↔ 서비스업간 업태전환도 포함
-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세분류(5단위), 서비스업은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새로운 품목의 기준 : 제조업 품목분류표(www.sbc.or.kr)의 사업 전환지원 사업내 사업소개 참조에 따른 분류(8단위)가 다른 품목 (제조업에 한함)
- 사업전환 실시기간 :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1회에 한해 1년 이내 연장 가능)
- 사업전환비중 : 전환·추가된 업종·품목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자격

승인 신청자격

-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1.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제외)
 -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
- 2. 상시 종업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3. 전환대상 업종 또는 품목이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35% 이상이며, 그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
-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업종으로 전환하지 않는 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업종 :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기타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 제외)
- 5.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 제외대상 업종(www.sbc.or.kr의 사업 전환지원사업내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 참조)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이 아닐 것

신청 제외대상

1.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탈락일 또는 승인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2. 휴·폐업중인 기업
3. 신청일 현재 사업전환계획 업종 또는 품목의 최초 매출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기업

◆ 지원시책

사업전환 무료 자기진단 및 수립 지원

- ▶ 사업전환 자기진단 서비스 제공(www.sbc.or.kr)
- ▶ 사업전환계획 수립에 대한 상담 및 보완

컨설팅 지원

- ▶ 지원내용 : 사업구조개편, 재무구조, 신제품개발 등 사업전환 계획 실행에 필요한 컨설팅
- ▶ 지원한도 : 업체당 2,400만원 이내 보조(컨설팅비용의 80%이내)

융자 지원

- ▶ 지원대상 : 사업전환 계획 승인기업으로 중진공 자금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 ▶ 지원내용 : 업종전환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4%(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 대출기간 : 시설(8년, 거치 3년), 운전(3년, 거치 1년)
- ▶ 대출한도 : 업체당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 자금지원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bc.or.kr) 참조

사업전환절차 간소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내지 제20조에 의거 주식교환, 영업양수도 등의 절차 특례 인정

기타 지원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전환 추진기업에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고용안정 및 재직자 능력개발 지원(고용보험법 제15조의2 및 제16조), 유희설비 매각정보 제공 등 지원